定　　款

學 校 法 人　我 利 學 園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실업 및 예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아리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가온고등학교
2. (가칭)가온예술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장이 편성하되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 후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예산·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 매 회계년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회계 감사)
이 법인에 속한 학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 내역 중 100만원 이상 집행된 구입, 공사 등의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 보고서를 작성 후 법인 감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감사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는 감사 결과를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사학윤리 강령 준수 등)
①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이 법인 및 유지·경영학교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12조의5 (윤리규범)
법인 및 학교소속 교직원의 윤리규범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준수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1인 포함, 개방이사 2인 포함)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 포함)

제14조 (임원의 의무와 임기)
① 이 법인에 소속된 임원은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언행을 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 법인의 추구하는 교육적 성과를 위하여 이 법인에 속한 학교의 운영 실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임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해임 의결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8조의 3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때
6.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때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법인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취지를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 이사정수의 4분의1, 소수점 이하 절상

제15조의4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2개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15조의5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가온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과 간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추천 요청을 받거나 기타 회의 개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운영한다.
2.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 1인의 추천도 개방형 이사의 추천과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 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15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17조 (이사장의 선출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의2 (상근 임원의 지명)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이사 중 1명(이사장 포함)을 상근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상근 이사의 담당업무 및 보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2조의3에 의거한 이 법인 소속학교의 결산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 보수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의 1항에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27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금전신탁
3.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사업

제28조 (수익사업의 명칭) 삭제

제29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28조의 사업소는 경기도 안성시 샛터길 46번지(발화동)에 둔다.

제30조 (관리인)
① 제2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 및 제22조 제2항 8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매년 수익사업의 결산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3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4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교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이외의 모든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이를 위해 자체전형을 시행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

다.)

제34조의2 (기간제)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34조의 3의 ②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사립학교법 제54조 4 규정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임면권을 학교장에 위임 한다.

④ 학교의 장이 3항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거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임면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① 임명권자는 정년퇴직한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나 특정업무 또는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의4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35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6조 (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35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5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5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5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11.. 제35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8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간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제35조 제2호내지 제4호와 제6호, 제8호내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35조 제7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삭제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의 2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의 봉급 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0 (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1조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2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의2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정년 전에 자진해서 명예퇴직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중 재직 시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자격 기준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에 수반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의3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의 명예퇴직 시행지침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4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2 절 위 원 회

제 1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43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4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 자 중 8인(학교장 제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지 않는 인사기준 등 제도적인 사항에 관한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제48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0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관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5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제51조 및 제51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1조의 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 및 교육관계 제반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계 법규를 위반함으로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1조의 3 (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사립학교법 제66조의 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4조의2 (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 가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4조의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2항의 통고를 받은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7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59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 무 직 원

제60조 (자격)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및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61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1조의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2조 (준용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임면·보수·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준용한다.

제62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베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둔다.
2.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센터는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4.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사실이 인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을 적절하게 조치를 하며,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63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 (신분보장)

내용삭제

제64조의2 (명예퇴직)

①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 지급액 등 기타 필요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65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중 여기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 을 준용하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의 2(징계의 사유 및 종류)

일반직원의 징계 사유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인에 소속된 학교의 일반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교육관계법령 및 교육관계 제반 규정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삭제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5조의 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의4(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재심위원회)

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인에 소속된 이사 또는 법인 소속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66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서기관(4급)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 등 학 교

제67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두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⑤ 교사는 교장의 정당한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68조 (하부조직)

① 고등학교 교무조직에 적정한 수의 부를 두며 부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 단 부장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학교의 사무조직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각 부장의 임면은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학교장은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임용결과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정　　원

제69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7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1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규학습 종료 후와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의2 (개방이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 관계 여부 확인서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다만, 이 경우 추천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결원 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위촉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교원위원은 학교에 재임 중인자로 한다. 또한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따른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

할 수 있다

제7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제76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제75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7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8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9조 (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2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83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4조 (회의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제87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88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89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가온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90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 (이하 “심의 등” 이라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라 한다)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92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 (분쟁조정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5조 (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이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7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8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 이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99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101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10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3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포함)	평가기준	평가금액	출연의사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년)	주 소
설립자	김정일	1955.6. 5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3-18 401호
이사장	김학봉	1951.5.19	4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36-505
이 사	이근석	1967.8.16	4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수색청구아파트 101-504
이 사	김영구	1952.6. 3	4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15-1601
이 사	김용진	1948.1.20	2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8-15 진빌딩 701호
이 사	조용식	1944.1. 8	2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75
이 사	박영필	1948.4.17	개방이사선임시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1동 브라운스톤 101-705
이 사	변권훈	1947.2.12	개방이사선임시까지	경기도 안성시 숭인동 동신아파트105-603
감 사	이현식	1970.2.27	2008.10.16-2011.0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420-307
감 사	박원철	1958.9. 5	추천감사선임시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꿈동산아파트 1903-802

제104조 (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이 법인의 설립당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재산을 출연한자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생년월일	출연재산내역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포함)	평가기준	평가금액	출연의사
김창호	1938.1.2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8-5	감정평가	670,144,000	무상출연
		경기도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8-7	감정평가	552,096,000	
(주)코주부씨앤에프	134411--0018845	현 금		631,201,000	무상출연
김정일	1955.6.05	현 금		35,000,000	무상출연

② 이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당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의 000% 이상을 출연 또는 기부한자는 다음과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2월 0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 교원에 대한 적용)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를 적용한다.

② 다만 이 정관 개정 이후의 학교장이 기간제인 경우에는 제35조의 3의 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 교원에 대한 적용)

이 정관 시행 당시 휴직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장등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를 적용한다.

② 이 정관 개정 당시 재임 중인 교감의 임기에 관련하여서는 이 정관 개정된 날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며 그 임기는 이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개시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10명
행 정 직 계	7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 술 직 계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기타 직명은 이 직급표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타 직명은 이 직급표에 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1. 고 등 학 교

총 계	9명

행 정 직 계	5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 술 직 계	4명
관리운영직군계	2명
9급(사무운영)	2명
시설관리직군계	2명
9급(시설관리)	2명